



“보건소 담당자의 감염사실 폭로는 에이즈예방법 7조 위반”

글_ 김민중 · 전북대학교 법대대학 교수

사례2 | 보건소 직원이 감염사실 폭로

A씨는 감염사실을 통보받았던 당시 잠시 사귀던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면 좀 속편이므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은 연락이 두절되자 핸드폰 명의의 사귀던 사람을 추적하여 A씨를 찾는 다며 이런 사이인지를 추궁하고 핸드폰을 열어보며 A씨가 감염자란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 때문에 당시 사귀던 그 사람에 의해 주위 동성애자 친구들을 비롯해 A씨를 아는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감염 사실이 알려졌다. 그 당시 A씨를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할란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A씨는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침묵하였고, 현재도 커뮤니티에 참여도 나오면 즉시 자 사귀어 내 감염사실을 알고 뒤에서 주먹구구지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사례출처: 에이즈인문요양 나누리 4)

비밀누설은 일반적으로 금지

업무수행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전단적으로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공개시에는 감염자의 동의 얻어야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일정한 위험계층, 예컨대 동성연애자·약물중독자·배우자 사이에서는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에이즈감염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감염위험계층을 에이즈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가족·성파트너 및 주사기를 함께 사용하는 약물중독자와 같이 에이즈감염자의 인근에 있는 최소한의 감염위험계층에게와 같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에 대한 조속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에이즈감염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지도하는 경우에도 에이즈감염자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에이즈감염자의 동의를 얻어 에이즈감염의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른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비밀누수에 의하여 보호되는 에이즈 감염자의 개인적 이익보다도 비밀공개에 의하여 보호될 제3자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 에이즈감염의 비밀은 전단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 가령 에이즈감염자가 연젠가 수

혈을 한 사실이나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 혹은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를 제공한 사실을 의사가 안 때에는 수혈자 혹은 정자·장기제공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지체없이 혈액원이나 정자은행·장기은행에 통지하여 알릴 수 있다.

감염 사실을 소문낸 사람은 모두 처벌 가능

사례에서의 보건소 직원은 아마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서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건소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A의 에이즈감염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나 지 A의 에이즈감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있으나, A가 전에 잠시 사귀던 사람(비록 그 사람의 병으로 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에게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성애자냐고 묻고 A가 에이즈감염자라는 사실을 폭로한 행동에는 절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를 통하여 A는 보건소 직원에 의한 에이즈감염자 사실이 공개되어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면 정신적 충격, 고통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A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보건소 직원을 관리하는 국가나 그 보건소 직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귀던 사람이 주위의 다른 동성애자에게 A의 감염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감염사실을 폭로한 사람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률상 개인의 비밀누설금지를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에이즈감염의 누설이 에이즈감염자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명예와 같은 법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A는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예를 들어 앙심을 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감염사실을 올려 A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물론 에이즈감염의 사실이 공개된 결과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 처벌을 받으므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비밀을 누설한 보건소 직원을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례에서와 같이 사귀던 사람이 주위의 다른 동성애자에게 A의 감염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감염사실을 폭로한 사람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률상 개인의 비밀누설금지를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에이즈감염의 누설이 에이즈감염자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명예와 같은 법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A는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예를 들어 앙심을 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감염사실을 올려 A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